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24
----------	-----

2019. 1. 29.(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윤남진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19년 1월 9일

다. 회부일자 : 2019년 1월 11일

라. 상정일자 : 2019년 1월 18일

(제3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윤남진 의원)

가. 제안이유

-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령산 자연휴양림의 운영, 이용요금처리 방법 등의 관리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 자연휴양림의 운영, 요금 징수 방법 등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 사용료 감면, 위약금, 환불처리 등에 대하여 정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3. 검토보고 요지

(건설환경소방수석전문위원 김병준)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조령산 자연휴양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약방법, 시설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에 따라 자연휴양림 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함.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시설사용료에 관련된 사항만을 규정했던 현행 조례의 제명을 ‘운영 및 관리 조례’로 전부개정하면서 자연휴양림의 명칭 및 위치, 적용 범위, 자연휴양림 관리자의 의무 및 책임, 휴관일, 자연휴양림 예약 신청 및 성립 등 세부적인 운영사항에 대하여 정하였음.
- 제6조는 매주 월요일을 정기휴관일로 지정하여 직원들의 근무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1조는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연휴양림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제12조는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가정, 병역명문가 가족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경우 정해진 감면율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하여 신설하였고, 제16조는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이용객 준수사항을 정하였음.
- 전국 평균 수준의 시설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4인실과 6인실 사용료를 현행 대비 약 12% 인상하여 연간 약 4천만원 정도의 수입증대가 예상됨.

☆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충북도민은 20% 요금할인 신설

구 분	시 설 사 용 료 (천원)								
	'18년 (A)			'19년 예상 (B)			증△감 예상액 (C=B-A)		
	계	비수기	성수기	계	비수기	성수기	계	비수기	성수기
사용료	317,277	67,900	249,377	357,673	77,343	280,330	40,396 (12.7%)	9,443	30,953

☆ 연도별 시설사용료 수입 :

(‘17년) 335,735천원 → (‘18년) 317,277천원(‘17 대비 18,458천원, 5.5% 감)

- 기타 조항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입법 예고(‘18. 12. 21.~‘18. 12. 28.)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라. 검토의견

-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령산 자연휴양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약 방법, 시설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 따라 충청북도에서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자연휴양림의 명칭은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으로 한다.

② 자연휴양림의 위치는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새재로 1795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3. “주중”이란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4.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5. “시설사용료”란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한 산림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예약일”이란 자연휴양림 이용을 위해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또는 홈페이지

이지를 통해 예약을 진행한 날을 말한다.

7.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이란 국·공·사립에서 조성·운영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야영장 등 산림휴양시설을 통합하여 예약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8. “사용일”이란 실제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날을 말한다.
9.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10.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를 말한다.
11.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12.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의 병역이행자와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13. “도민”이란 충청북도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14. “명예도민”이란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 제4조에 따른 명예도민증서 수여자를 말한다.
15. “도민대상수상자”란 「충청북도 도민대상 조례」 제9조에 따른

충청북도 도민대상 수상자를 말한다.

16.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재직자”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 재직자를 말한다.

17. “관리자”란 자연휴양림 운영을 총괄하고 이용객이 산림휴양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조성한 조령산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의무 및 책임) 자연휴양림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안전 및 시설물 보호
2. 이용객에 의한 산림훼손 방지 및 산림경관 보존
3. 환경오염 방지
4. 산불예방 및 진화체제 확립
5. 그 밖에 자연휴양림의 기능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의 예방

제6조(휴관일) ① 자연휴양림의 정기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성수기와 월요일 또는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휴관일에서 제외한다.

② 기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③ 휴관일로 정할 때에는 7일전까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시간) ① 객실의 입실시간은 사용일 14시부터 22시까지이고 퇴실 시간은 퇴실일 11시까지로 하며, 입실시간 내에 입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특별히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실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애완동물과 혐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입마개를 부착한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3.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물품 등의 판매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4.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토석을 채취하는 등 산림을 훼손하는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연휴양림의 안전과 관련하여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시설사용료 등의 징수)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시설사용료는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무통장 입금 등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 ① 관리자는 자연휴양림내의 산림경영, 산림 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도지사가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로 사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2. 시설의 개·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이용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 지정 시 그 내용을 산림휴양통합플랫폼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예약신청 및 성립)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하여야 한다.

② 도민 및 도내 소재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재직자는 숙박시설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③ 예약자 명의로 예약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도에서 지정한 계좌에 예약금을 전액 납입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예약일이 사용일로부터 3일 이내(성수기 10일 이내)일 경우에는 예약 즉시 결제하여야 하며, 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신

청이 취소된다.

④ 당일 현장에서 이용 신청 및 결제를 할 경우 그 즉시 이용 계약이 성립한다.

제12조(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휴양림 업무와 관련된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면제
2. 도지사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면제
3. 휴양림과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면제
4. 장애인, 국가보훈 대상자, 다자녀 가정, 병역명문가 가족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경우
5. 도민대상수상자 및 명예도민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시설사용료의 감면율은 별표2의 기준에 따른다.

제13조(위약금 처리) ① 예약의 취소 및 변경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자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예약한 사람이 예약사항을 취소한 경우와 승인 또는 허가 없이 매매, 교환하여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별표3에 따라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하고 사용료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③ 사용일 당일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실하지 않거나 제8조에

의하여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④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환불처리) ① 자연휴양림 이용객이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납입한 시설사용료 환불을 요구할 경우 즉시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② 예약을 취소하거나 요금을 잘못 입금한 자에게 관리자는 3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자연휴양림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별표3에 따라 시설사용료 및 배상금을 포함하여 환급할 수 있다.

④ 시설사용료 환급에 따르는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급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용 중 퇴실하게 될 경우 사용일을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이용금액을 제외한 잔여요금에 대하여 환불하여야 한다.

제15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연휴양림의 이용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보전·산림병해충방제 등 자연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경우

3. 산불·산사태 등 자연휴양림 시설을 이용할 때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이용객 준수사항) ① 자연휴양림 이용고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행성 오락 및 무분별한 음주, 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2.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분리수거하고 취사 및 화기취급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여야 한다.

3.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에만 입실이 가능하다.

4. 산불조심 기간에는 자연휴양림 내 등산로 폐쇄에 협조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여 자연휴양림의 기능유지를 저해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용객이 볼 수 있는 곳에 부착 및 비치하여야 한다.

③ 이용객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실조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금액을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17조(손해배상) ① 귀중품을 별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발생한 도난 사고에 대하여는 자연휴양림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이 조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자연휴양림 관리자와 이용객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상법 등 관계법령 및 공정 타당한 일반관례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자연휴양림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하는 피해
2.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
3. 자연휴양림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4. 이용객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

제18조(변상청구)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자연휴양림 시설이 파손되거나 집기를 훼손·분실하는 등의 경우 이용객은 이를 원상회복시키거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훼손·분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세입 처리) 자연휴양림의 수입은 충청북도 일반회계세입으로 한다.

제20조(위탁관리) ①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 위탁기간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하여 정한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설물 사용에 대한 예약을 완료하였거나 시설물을 사용 중인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시설사용료

□ 시설사용료 기준

구 분		기 준	1일 요금(원)		비 고
			비수기 주중	성수기 및 주말	
숲속의 집	26㎡ 이하	1동/4인	42,000	60,000	
	30-36㎡	1동/6인	56,000	80,000	
	50-54㎡	1동/10인	77,000	110,000	
	58-60㎡	1동/12인	98,000	140,000	
다가구 숲속의집	21㎡	1실/4인	42,000	60,000	
	30㎡	1실/6인	56,000	80,000	
단체숙소	84㎡	1동/1일	98,000	140,000	
복합휴양관	25㎡	1실/4인	42,000	60,000	
	38㎡	1실/6인	56,000	80,000	
	63㎡	1실/10인	84,000	120,000	

[별표 2]

시설사용료의 감면율

구분	감면대상	기준	감면요율	비 고
숲속의집, 산림휴양관	장애인	1~3급	요금의 50% 할인	비수기 주중에 한함
		4~6급	요금의 30% 할인	
	국가보훈대상자	1~3급	요금의 50% 할인	
		4~6급	요금의 30% 할인	
	다자녀가정	요금의 30% 할인		
	병역명문가 가족	요금의 30% 할인		
	도민	요금의 20% 할인		
	도민대상 및 명예도민	요금의 50% 할인		

[별표 3]

시설사용료 환불 및 배상

구 분	적 용	환불 및 보상규정	비 고
1.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할 때	가. 성수기 1) 사용예정일10일전 취소 2) 사용예정일 7일전 취소 3) 사용예정일 5일전 취소 4) 사용예정일 3일전 취소 5) 사용예정일 1일전 취소 6)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나. 비수기 1) 사용예정일 2일전 취소 2) 사용예정일 1일전 취소 3) 사용당일 취소 ※ 예약금 입금 당일취소	-전액환불 -예약금의 10% 공제후 환불 -예약금의 20% 공제후 환불 -예약금의 40% 공제후 환불 -예약금의 60% 공제후 환불 -예약금의 80% 공제후 환불 -전액환불 -예약금의 10% 공제후 환불 -예약금의 20% 공제후 환불 -전액 환불	
2.관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할 때	가. 성수기 1) 사용예정일10일전 취소 2) 사용예정일 7일전 취소 3) 사용예정일 5일전 취소 4) 사용예정일 3일전 취소 5) 사용예정일 1일전 취소 6)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나. 비수기 1) 사용예정일 2일전 취소 2) 사용예정일 1일전 취소 3)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예약금환불 -예약금환불 및 시설사용료 10%배상 -예약금환불 및 시설사용료 20%배상 -예약금환불 및 시설사용료 40%배상 -예약금환불 및 시설사용료 60%배상 -예약금환불 및 시설사용료 80%배상 -예약금환불 -예약금환불 및 시설사용료 10%배상 -예약금환불 및 시설사용료 20%배상	
3.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예약을 취소할 때		-전액 환불	
4.사용기간 만료 전에 퇴실할 때 (천재지변, 관리부실)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금액 환불	

관 계 법 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2. 21.>[본조신설 2015. 1. 20.][제목개정 2018. 2. 2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해당 자연휴양림등의 조성·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6. 6. 21., 2017. 12. 29., 2018. 8. 14.>

1. 국민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10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 10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0의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사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사자가족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

14. 해당 자연휴양림등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

15. 해당 자연휴양림등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등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31.]

제10조(자연휴양림등의 위탁) ① 법 제22조에서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로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 9. 17., 2012. 1. 6., 2014. 12. 3., 2017. 6. 27., 2017. 12. 29.>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1의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독립가, 임업후계자 또는 산림기술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단체

② 법 제22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장하는 경우에 그 횟수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0. 9. 17.>[제목개정 2017. 12. 29.]